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정비 및 중수청수사관 등 포함〉

■ 이해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1232호)

2026.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해식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9. 9.
3. 회부연월일 : 2026. 9.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II. 검토의견

개정안은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2026. 10. 2. 시행 예정)에 맞추어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8호).

현행	개정안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 7. (생략) 8.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6조의2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 9. ~ 11. (생략)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 ----- ----- -----. 1. ~ 7. (현행과 같음) 8. 「형사소송법」 제494조에 따른 공소청 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 ----- ----- ----- 9. ~ 11. (현행과 같음)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災害)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를 말함.¹⁾

현행법은 위험직무순직에 대해 일반적인 순직보다 높은 수준의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²⁾ 제5조 각 호에서 위험직무순직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음.

이 중 현행법 제5조제8호³⁾는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6조의2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를 위험직무순직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로 규정하고 있음.

-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재해(災害)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2) [순직과 위험직무순직 비교]

구분		순직	위험직무순직
대상		(현행법 제3조제1항제3호) ·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 재직 중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현행법 제3조제1항제4호) ·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災害)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보상	유족연금	(현행법 제36조) · 해당 공무원의 사망당시 기준 소득월액의 38% + 5~20%	(현행법 제38조) · 해당 공무원의 사망당시 기준 소득월액의 43% + 5~20%
	유족보상금	(현행법 제37조) · 공무원 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현행법 제39조) · 공무원 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8.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6조의2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

개정안은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2026. 10. 2. 시행 예정)에 맞추어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 위험 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위험직무순직의 요건이 되는 공무원의 신분 중에서 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를 삭제하고, ② 「형사소송법」 제494조에 따른 공소청 직원과 ③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추가하는 것임.

[현행과 개정안의 위험직무순직의 요건 비교]

요건	현행		개정안	
	구분	상세	구분	상세
공무원의 신분	「형사소송법」 제197조4)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경찰	현행과 같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검찰청 직원(검찰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 마약수사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형사소송법」 제494조에 따른 공소청 직원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직원 중 검찰총장 또는 근무지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6조의2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 ⁵⁾ -교도소장 등(제3조) -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제4조) -교도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등으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현행과 같음	

요건	현행		개정안	
	구분	상세	구분	상세
		제청에 의하여 근무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제5조) -근로감독관 등(제6조의2)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직무행위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		현행과 같음	

[위험직무순직의 요건 변동 상세]

현행	개정안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형사소송법 체계 개편(검찰청 폐지)으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조문 제목과 내용이 삭제됨(다른 제목과 내용으로 개정) ①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494조(형의 집행 등을 위한 공소청 직원의 직무 등) ※신설 ①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직원 중 검찰총장 또는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공소유지, 형의 집행 및 「공소청법」 제4조제7호에 따른 법률상 검사의 직무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제1편제9장에 규정된 구속영장의 집행(제475조·제492조 및 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편제10장에 규정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제137조에 따른 수색 및 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구속영장 또는 소환장이 발부된 피고인·증인의 소재 확인 및 형집행장의 집행에 필요한 제19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통신비밀

- 4)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③ ~ ⑥ 삭제
- 5)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현행	개정안
* 「검찰청법」 제47조(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수행) ①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또는 마약수사서기보로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소속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1.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및 마약수사주사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 2.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및 마약수사서기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3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 ② <u>별정직공무원으로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공무원</u>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1. 5급 상당부터 7급 상당까지의 공무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 2. 8급 상당 및 9급 상당 공무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3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u>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u>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 중 사법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4급부터 7급까지의 직원이, 사법경찰리가 수행하는 직무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8급·9급 직원이 각각 수행한다. ③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직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에서 <u>수사는 제외한다.</u> ④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직원은 그 직무에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에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하 “수사관”이라 한다)을 두며, 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직무) 중대범죄수사청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u>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u> 2.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개정안의 내용 중 첫째, 위험직무순직의 요건이 되는 공무원의 신분 중에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를 삭제하는 것은 「검찰청법」 폐지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둘째, 「형사소송법」 제494조에 따른 공소청 직원을 추가하는 것은 동 조항에 따라 이들이 수행하는 구속영장 집행,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가 상당한 물리적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됨.⁶⁾

다만,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494조에 따른 공소청 직원”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제494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뿐만 아니라 공소청의 일반 직원 전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바, 해석상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494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과 같이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

셋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추가하는 것은, 내란·외환, 마약, 수뢰 등 중대범죄⁷⁾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고위험 직무 수행과정에서

6)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494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은 기존 형사사법 체계에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에 따른 직무 중 수사 관련 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직무가 그대로 승계·유지하는 것이라고 함.

※ 「공소청법」은 부칙을 통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공소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7)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1장의 죄, 제2장의 죄, 제39장의 죄, 제40장의 죄,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및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변호사법」 제111조, 「정치자금법」 제45조,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범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5조, 제6조, 제8조, 제8조의2 및 제11조의 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범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제125조의 범죄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산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각각 규정된 범죄, 「형법」 제114조의 범죄

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각각 규정된 범죄

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및 제38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형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범죄 중 기술유출 등 국가핵심기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2호의 국가핵심기반을 말한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

사망한 경우를 보호하려는 위험직무순직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한편,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수반되는 기존 공무원의 소속 변경 및 임용 특례⁸⁾ 과정에서 재해보상 관계의 공백을 방지하고, 기존 검찰청 직원의 수사 관련 재해에 대한 기득(既得)적 재해보상 관계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의 범죄
사. 「형법」 제123조의2의 범죄

2. “중대범죄등”이란 중대범죄 및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 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공무원은 그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

다. 중대범죄 및 가목·나목의 범죄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8) 「공소청법」은 부칙을 통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보도록 하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는 위와 같이 공소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는 사람 등에 대하여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음.

※ 「공소청법」 부칙 제7조(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검사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검사로, 종전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본다. 다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원의 임용 특례) ① 2026년 10월 1일 당시 검찰청 소속 공무원(시보 임용 중인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제18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검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

2. 검찰직렬·마약수사직렬 일반직공무원 및 해당 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16조에 따른 동일 계급 또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

3. 제2호 외의 일반직공무원: 제14조에 따른 동일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② ~ ⑦ (생략)

개정안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 이후에도
공소청 직원은 재판 중 도주한 피고인이나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도주한 형 미집행자에 대한 검거·체포 업무를 그대로 승계·유지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법무부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494조에 따라 공소청 직원은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에서도 공판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검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물리적 위험성을 수반하므로, 「공무원재해보상법」 제5조
제8호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2
